

제417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8월22일(목)

장 소 국토교통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3)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1)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7)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2)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0)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1)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1)

상정된 안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3) 2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1) 2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7) 2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2) 2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0) 2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1) 2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1) 2

(10시25분 개의)

○소위원장 권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 방법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성을 위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3)
 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1)
 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7)
 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2)
 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0)
 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1)
 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1)

(10시26분)

○**소위원장 권영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7건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건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표를 보시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건의 개정안은 크게 일몰조항에 관한 사항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제도개선에 관한 내용은 일몰조항의 연장 또는 폐지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일몰조항에 관한 사항을 먼저 심사를 하셔서 일몰기한을 연장할지 아니면 폐지하여 상설화할 것인지 그리고 일몰 연장 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뿐만 아니라 쪽방 밀집지역에 대한 현물보상 규정까지 함께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아울러 일몰기한을 연장한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연장을 할지에 대하여 논의를 하신 후에 제도개선에 관한 심사를 이어 가시는 것이 효율적인 심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면 먼저 일몰조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일몰규정을 두고 있는 조항은 두 가지로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고 나머지 하나는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에서의 현물보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먼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1년 7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도입이 되어 2021년 9월 21일부터 2024년 9월 20일까지 3년간 한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다음 달 9월 20일이 지나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울러 현행법 제27조의4에 따라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의 토지등소유자가 그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협의 양도할 경우 현금보상 원칙의 예외로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되고 있는데 이는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같이 현물보상을 허용하되 장기간에 걸쳐 과도하게 혜택이 부여되지 않도록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2024년 9월 20일까지만 현물보상의 특례가 인정되고 있

습니다.

이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조정과 관련하여 강선우 의원안은 3년 연장 김남근 의원안은 5년 연장 한민수 의원안은 7년 연장 김재섭 의원안은 내년 말까지 1년 3개월 연장 한정애 의원안과 문진석 의원안은 유효기간 규정을 폐지하여 상설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쪽방 밀집지역에 대한 현물보상 규정의 유효기간 조정과 관련해서는 강선우 의원안은 3년 연장 김재섭 의원안은 1년 3개월 연장 한정애 의원안과 문진석 의원안은 일몰규정을 폐지하여 상설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개정안의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에서의 현물보상 특례 연장기간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연장기간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몰조항에 관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영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차관님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물론 여기에 개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소위 위원님들 이해를 돋기 위해서 공공 도심복합사업에 대한 참고자료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일단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있듯이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21년에 민간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수용권을 발동해서 신속하게 주택을 상업시설과 같이 복합 건설하는 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재개발 같은 게 굉장히 어렵고 또 빠른 사업을 원하는 곳에서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 요건도 굉장히 완화돼 있고 절차 간소화와 또 인센티브도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제도 도입 시 토지수용 등 민간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그런 사업 방식 등을 이유로 3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도가 맞춰져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절차를 보시면 후보지 발표부터 예정지구 지구지정이 있는데요 9월 20일이 3년이 되어서 일몰이 되는데 만약 일몰이 되면 예정지구가 지정된 곳은 그대로 가는데 아직 예정지구까지 지정되지 못한 곳들은 다 일몰이 되어서 없어지게 됩니다.

현재 55곳이 전체적으로 후보지로 발표됐는데 그중에서 33곳 한 5만 5000세대가 아직 예정지구로 미지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후보지가 작년 말에 제일 마지막으로 10차가 발표됐는데 후보지 발표에서 예정지구까지는 최소 한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내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1년 3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게 어떠냐 그런 정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뒤 페이지 보시면 작년 정기국회 말에 민간이 똑같이 하는 도심복합사업 제정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내년 2월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내년 말 정도 되면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본격적으로론칭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적어도 기준에 현재 하고 있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차질없이 가고 또 그 이후 사업은 민간 도심복합사업으로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1년 3개월,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게 어떤가 그런 정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영진**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에 다 동의하십니까?

○**김기표 위원** 후보지 발표부터 지구지정까지 최소 기간을 1년 3개월로 보는 건가요? 그래서 1년 3개월인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아닙니다. 후보지 발표에서 예정지구까지 대략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예정지구까지 선정이 되면 그다음에는 법이 폐지돼도 사업이 가는 거고?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런데 아직 후보지만 발표되고 전혀 진행이 안 된 곳도 많이 있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그런 곳이 33곳, 세대수로 5만 5000세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몰이 되면 후보지 단계에 있는 사업들이 백지화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 혼란과 민원이 발생되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겁니다.

○**김기표 위원** 그런데 그게 한 2년이면, 1년 3개월이면 너무 짧은 것 같은데요. 법을 그렇게 빨게 개정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적어도 최소한 3년 정도는 해야, 사업을 해 가면서 후보지 발표부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최소한 3년 정도는 연장해 줘야 이 지구들이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좀 더 원활하게 넓게 규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1년 3개월이면 너무 최소한으로 잡은 것 같아서 그건 입장을 조금 변경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1년 3개월 가지고, 최소한으로 했는데 그러면 또 연장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한 3년 정도는 해서 일몰을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영진** 차관님, 지금 후보지 발표에서부터 예정지구까지, 16개 사업은 예정지구가 지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권영진** 그들 사업에서 대체로 가장 늦게 오래 걸린 게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어요? 2년을 넘긴 건 없나요, 후보지에서 예정지구까지?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후보지 발표에서 예정지구까지 가장 오래 걸린 게.....

○**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 이경호** 제가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영진** 예,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 이경호** 저는 국토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 이경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예정지구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냐고 말씀하셨는데 실은 3년이 넘었는데 아직 예정지구가 안 된 지역들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영진** 3년이 넘었는데도 안 된 지역도 있어요?

○**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 이경호** 예, 그런 지역도 있긴 있습니다.

○**김정재 위원** 안 된 이유는 뭐예요, 특별히?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철회하는데도 많으니까, 철회하는 데도 있고 이러니까.

○**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 이경호** 지역별로 상황은 좀 다릅니다만 지역의 사

업성이 조금 좋지 않다거나 아니면 주민 동의율이 조금 낮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는 사업이 좀 더디게 진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은혜 위원** 질문 하나 있습니다. 사업성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공공주택 특별법상의 공공 도심복합사업이라는 것은 그동안 민간으로 추진했을 때 제대로 진척이 이루어지지 못했거나 아니면 주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형성되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나 재개발의 필요성이 있을 때 이 사업은 한번 진행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민간이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줬던 것은 공공이 사업성은 다소 포기하더라도 주민들의 거주권을 개선하겠다는 의지 때문에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성을 이야기하실까요, 주민들이?

○**김정재 위원** 주민들은 사업성이 최고지요.

○**김은혜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성을 원한다면 민간을 선택해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LH가 아닌 민간이 진행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 이경호**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은혜 위원** 아니요, 제가 답변할게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딜레마가 있다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공공 도심복합사업이니까 사업 시행자는 당연히 공공이고요, 민간은 없고. 다만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절차도 굉장히 간소화돼 있고 인센티브도 여러 가지, 이게 2종 주거를 준주거로 한다든지 이런 종상향도 굉장히 강화돼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재개발에 비해서 동의율이, 일반 재개발은 4분의 3인데 이것은 3분의 2로 완화돼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후보지 발표할 때는 전체 주민들 30%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예정지구로 하려면 과반이 돼야 되고 지구 지정하려면 3분의 2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수용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 땅은 싸게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거기서 건물을 현물보상을 받으려면 결국은 분양을 받아야 되는 구조니까 그 차익이 크게 되면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후보지 발표에서 동의했던 사람들도 ‘이것 아니네. 나 민간으로 할래’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나 사전검토 이런 것 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되는 사업도 있고 또 일부 사업들은 ‘우리 지구는 재개발도 안 되는 사업장이야. 그러니까 이 사업장은 이것밖에 방식이 없어’ 그래서 빨리 가는 사업장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은혜 위원** 차관님, 제가 차관님하고 논박을 벌일 사안은 아닌데 당초 21년 6월 15일에 공공주택 특별법이 법안이 소위에서 논의됐을 때의 자료를 보면 그 당시에 국토부에서 윤성원 차관님이 말씀하신 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선택의 길이 열려 있다. 따라서 지금 인천에서는 리츠 형태로 두 군데가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공 100%가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지금의 말씀은 다릅니다. 이 법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그것은 맞지 않은 지적이라서 제가 정정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권영진** 차관님, 이것은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공공주택 특별법이면 민간이 할 수가 없는데 왜 그때 민간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민간이 할 수가 있어요?

이건 공공이 하는 사업 아니에요?

○**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 이경호** 국토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 이경호입니다.

실은 김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리츠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LH공사나 지역 지방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인데 거기 추가로 민간이 공동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민간이 참여를 같이해서 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마 국토부에서는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소위원장 권영진** 공동사업자로, 민간 단독은 아니고.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그러니까 리츠를 구성하더라도 거기에 소위 말하는 공공사업자가 과반 이상은 들어가야 되고……

○**소위원장 권영진**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소위원장 권영진** 민간이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안 되지.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작년 말에 제정해서 내년 2월에 시행될 예정이고요.

○**김은혜 위원** 따라서 주민들에게 선택지를 줄 수 있기 위해서는, 2023년 12월이잖아요? 국토부에서 후보지를 최종……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작년 말입니다.

○**김은혜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2년 정도 걸린다는 가정하에, 조금 더 추가해서 한다는 가정하에 1년 3개월 이게 정부안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김은혜 위원**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김은혜 위원** 그리고 굳이 내가 민간 단독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김정재 의원님 제정한 안으로 가도 되는 거거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권영진**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지금 일을 연장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는 상황이고 다만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아주 첨예한 의견 차이가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어쨌든 지금 후보지로 선정된 곳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기간이 얼마나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들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나 민원이 오기도 해서 제가 상황들을 좀 들었는데 일단은 지구마다 상황이나 특성이 좀 달라서, 어떤 지구의 경우에는 1년 3개월 안에 필요한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 지역도 있는데 그게 조금 어렵고 빠듯한 지역들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1년 3개월 안에 이 절차를 다 끝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예컨대 동의율을 확보하거나 또 주민 의견 청취하거나 하는 부분에서 좀 무리하거나 소홀한 그런 과정들이 생겨서 오히려 분쟁이나 갈등이 생길 여지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1년 3개월을 제안하신 취지도 이해는 가는데 기간을 조금 넉넉하게 줬으면 한다라고 의견을 피력하는 해당 지구들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까 김기표 위

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정도로 어느 정도 주민들이 차분하게 동의 여부를 판단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할 수 있게끔 조치하면 어떨까 합니다.

○소위원장 권영진 위원님들.

○김은혜 위원 제가 의견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영진 예.

○김은혜 위원 이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재개발·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후보지에서 예정지구 그리고 예정지구가 되면 지구지정이 되는 게 보통 용이하게 가는 편이라고 하지요. 그렇지만 후보지에서 예정지구까지 가는 게 3년 5년이 되면 이게 가능하나? 저는 그러기에는 지금 주민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갈등 구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결과만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차관님, 당초의 목표치 대비 성과가 즉 지구지정까지 성과가, 21년 22년 23년 24년까지 성과가 몇 퍼센트 달성이 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지금 현재 전체 55곳 중에서 16곳 2만 3000호가 지구지정이 됐고 4곳 3000호가 사업승인이 됐습니다.

○김은혜 위원 그러니까 당초의 목표 공급량이 있었잖아요. 목표 공급량 중에 실적률을 보면 22년에 12% 23년에 2% 이렇게 낮은 게 아까 국토부에서 설명하시기에는 주민들이 사업성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고 있고, 특히 이것이 법 통과 이후에 매매를 한 국민에 대해서는 현물보상이 아니라 현금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물론 당시에 국토부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지만 국민을 어떤 시점을 투기자냐 투기자가 아니냐 규정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소위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사업성에 대한 논란 그리고 재산권 침해에 대한 갈등이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치 대비 실적률이 12% 2%밖에 안 되는 거지요.

이게 3년 5년, 주민들의 뜻에 반한다면 무제한이라도 하지요. 그러나 3년 5년이라는 근거는 과연 어떤 객관적인 통계에 의해서 근거한 것이냐 하면 저는 자신을 못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몰 연장을 반대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법은 2·4 조치를 실시한 이후에 정부가 그 행정조치를 취한 이후에 입법권을 요구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법을 논의하는 입법권에 심대한 침해가 있었던바, 당시에 3분의 2라는 것도 국토부가 제안한 게 아니라 저희 여야 위원들이 토의로 만든 겁니다. 3분의 2 규정을 넣어서 3년 한시로 하되 다만 이 법이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들어서 성공적인 성과가 되는지를 보고 나서 그때 결정하자고 했지만 지금 2%의 성공률을 갖고 다시 연장을 하자? 저는 그것은 민간의 선택권을 제한했던 정부가, 이 법을 제안했던 그 당시의 취지에 보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일몰 연장을 반대하려 했습니다. 다만 현재 주민들이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 후보지로 된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통상 2년이 소요된바 23년 12월에서 2년 정도, 조금 더 여유를 내서 1년 3개월 정도를 드리면 23년 12월부터 25년 12월까지 하면 1년 3개월이 훨씬 넘지요. 2년이지요. 그래서 그 정도 1년 3개월을 연장해 보고 그 때에도 만약에 예정지가 안 된 곳들이 많다 혹은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하면 그때 이

법의 연장을 논의해도 저는 충분히 늦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영진 안태준 위원님.

○안태준 위원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원래 79곳이 후보지로 신청했다가 동의 과정을 못 해서 한 56개인가 지금 현재 남아 가지고……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55곳입니다.

○안태준 위원 55개인가요.

그러면 이후에도 지금 계속 후보지로 신청될 만한 가능성 있는 곳이 있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저희 해당 국에 추가 후보지에 관련해서 지자체나 이런 데서 추가적으로 문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준 위원 그런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추가적인 신규.

○안태준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이런 논의가 있고 김은혜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재산권 침해 논란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데 새로 낸 법을 슬쩍 보다 보니까 비법정 단계를 법정화시키는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 보완을 좀 하셨던데, 사실 문제는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좀 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30% 동의만 받으면 70%의 이해와는 관계없이 이게 취소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로 너무 오랫동안 오다 보니까 아마 이것을 아예 없애 버려야 된다 일몰 연장에 동의도 안 해야 된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논의는 충분히 하고 있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안태준 위원 다만 지금 보면 새로 신청할 곳 그다음에 이렇게 규정도 바꾸고 새롭게 법을 좀 바꿔 놓으면 다시 신청할 곳들 같은 경우에는 1년 3개월은 너무 짧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 현황을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물론 1년 3개월 후에 다시 한번 연장을 논의해 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3년 정도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저는 사실은 이게 공공주택법으로 추진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게 왜 사업성이 잘 안 나온다고 하냐면 처음에는 이게 개발이 안 되니까 막 하려고 했다가 실제로는 수용 형태잖아요. 주택이 수용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나가서 살 집을 또 마련을 해야 되는 상태고, 그런데 우스운 얘기로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이 나가서 살 집을 마련하기가 일단은 쉽지 않고, 그러면 집이라도 팔아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판매도 안 돼요.

잘 아시다시피 그 전의 법에 의하면 이것을 사서 들어오는 사람이 예를 들어 도정법의 딱지 개념으로 집을 받으면 좋은데 그 사람들한테는 현금으로만 주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30% 동의 받아 가지고 일단 지정해 놓고 나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것 취소하겠다고 할 수도 없고. 마찬가지로 좋은 줄 알고 막 시작을 했는데 막상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예정지구 법정 단계까지 50% 동의를 받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추가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너무 급작스럽게 내셔서 검토할 시간은 솔직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일단은 일몰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한다면, 실제로 정부가 내는 안에 대해서도 기존의 사업성 평가를 다시 할 수 있고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한다면 1년 3개월보다는 3년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은 저는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김기표입니다.

21년 3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열 차례에 걸쳐서 지금 55곳이 후보지로 발표됐다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물론 2023년 12월에 후보지로 발표된 곳도 진행되고 있겠지만 처음에 2021년 3월부터 된 곳 중에 안 된 곳도 있고 진행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현황이 있을 거예요. 이건 도대체 동의가 될 수가 없는 거다 이런 데도 있겠지만 아마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든지 이렇게 해서 근근이 퍼센티지 늘려 가는 데도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정부에서 1년 3개월 또 김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년 이것도 대체로 최소한 내지는 좀 잘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보면, 이게 지금까지 안 된 데는 안 된다 이렇게 단정할 건 아니고 계속해서 꾸역꾸역 가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김은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낙타하게 한 3년을 줘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안태준 위원** 저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권영진** 예, 말씀하시고 김정재 위원님.

○**안태준 위원** 이게 지금 계속 문제가 됐던 게 비법정 단계에서 안 하고 싶은데 취소가 잘 안 됐던 곳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내는 안에는 이 부분도 좀 보강이 되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막 2년씩 3년씩 늘어져 있는 사업 중에 안 하고 싶으면,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모아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간에 분쟁이 있으면 즉시 취소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 이경호**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 이경호과장입니다.

이번에 후보지 단계를 법정화하면서 후보지 단계에서도 철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 이상 주민들이 반대하면 철회할 수 있는 조항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태준 위원** 예를 들면 지금 예비 단계에서 지구지정까지는 1년 이내에 하도록 돼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후보지 단계에서 예비 단계까지의 기간 규정이 없었잖아요. 그것은 혹시 또 얼마 안에 해야 된다 이런 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 이경호** 그런 내용은 지금 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태준 위원** 실제로 이걸 유인하려면 그런 내용도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개정안은 보상평가 기준일 조기화를 위해서 비법정 절차였던

후보지를 법제화하고 철회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안태준 위원** 철회 기준도 주민 동의로?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안태준 위원** 아니, 30% 모으기도 힘들고 연락도 안 되는데 그걸 또 50%를 반대시키기 쉬울까요? 계속 사업지가 늘어지고, 이게 찬성하는 쪽에서 봐도 문제가 좀 있고 반대하는 쪽에서 봐도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이것을 일몰 연장과는 별개로, 일몰 연장을 좀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찬성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해 보겠다는 뜻으로 보면 안 하겠다는 사람들한테도, 예를 들어 민간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나 싶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영진** 김정재 위원님.

○**김정재 위원** 지금 위원님들 얘기 쪽 들어 보니까 결국은 일몰기간을 어떻게 하느냐 이건데 소위 지금까지 후보지로 지정된 데서 예정지구까지 가는 기간 명시를 2년이나 이렇게 합리적인 기간을 정해서 해 놓으면 물론 사업이 훨씬 더 진척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구별이 빨리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철회할 곳은 빨리 철회하고 진도 나갈 건 나가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그건 한번 검토해 보는 걸로 하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알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그다음에 일단 그 기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몰기간을 언제로 할 건가 이것도 사실은 지금 후보지가 예정지구까지 가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와 맞물려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균 2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늘어져서 좋을 건 없고요. 왜냐하면 반대하시는 분들은 빨리 일몰 다 정해져서 모든 게 클리어되기를 바랄 거예요. 찬성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을 더 끌어모아서 꾸역꾸역 한번 나가 볼까 이런 걸 겁니다, 현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10곳 후보지 지정된 것 중에 작년 12월이 몇 군데 되는 것 같던데 이것이 예정지구 될 때까지만 되면 그다음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民間이 내년 2월부터 또 시행이 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 마지막에 후보지로 지정된 데가 예정지구 가는 데 2년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 2년이라는 게 25년 12월이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김정재 위원** 그러니까 25년 12월이라서 아마 이렇게 1년 3개월로 안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래서 지금까지 후보지로 지정된 데가 예정지구까지 가는 데는 지장을 받지 않고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1년 3개월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을 질질 끌고 연장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되고 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한테 딱 기간을 줘서 할 때는 빨리빨리하고 또 안 되는 곳은 철회할 곳은 철회하고 이렇게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혜 위원님은 아까 맨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민간의 재산권을 해치고, 사실 사전에 김은혜 위원님께서 이것은 무조건 일몰 연장 안 된다라는 걸 강하게 주장을 하셨는데 그래도 여야가 같이하는데 오늘 빨리 신속히 끝내자 해서 저희가 나름 엄청 설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 말씀 들어 보니 저는 한 그쯤이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권영진** 서범수 위원님이 미리 발언 신청하셔서 서범수 위원님 하시고 이소영 위원님 하시지요.

○**서범수 위원**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이걸 기간을 많이 준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이 됩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렇지는 않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빨리 갈 곳은 빨리 가는 거고요 안 될 곳은……

○**서범수 위원** 빨리 갈 곳은 빨리 가고 안 될 곳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미리미리 빨리 정리, 오히려 희망고문을 줄 수가 있다. 금방 김정재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어느 정도 빨리 정리될 건 하고, 할 것은 하고 말 것은 말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지 기간을 많이 줘서 좋다, 3년을 주든지 4년을 주든지 많이 줘서 모든 게 해결이 될 것 같으면 기간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기간을 많이 주더라도 이게 다 해결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클리어하게 갈 수 있는 어떤 한도 정도는 줘 놓고 가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권영진** 이소영 위원님 하시고 복기왕 위원님.

○**이소영 위원** 사실은 3일 전에 정부안이라고 볼 수 있는 김재섭 의원안이 제출되기 전까지 5개의 의원 발의안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그게 하나는 한정애 의원안은 일몰을 폐지하고 상설화시키는 거였고요. 한민수 의원안은 7년 연장, 문진석 의원안은 상설화, 김남근 의원안은 5년 연장, 강선우 의원안은 3년 연장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이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지역구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요. 그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이런 안을 내신 거였고, 사실은 정부도 작년 6월 달에 보도한 내용으로는 2027년까지 3년 정도 연장 가닥을 잡았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중요한 이해관계자 당사자 중의 하나인 LH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소요되고 필요하다 이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나오는 전반적인 입장 보도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그래도 한 3개월 정도 쭉 의원안들이 발의되면서 논의되어 왔던 과정들도 전부 3년 연장 이상으로 기간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3일 전에 1년 3개월 안이 나와서 이게 이해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운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 개개 지구의 사정이나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질질 끄는 것은 안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다섯 분의 법안 발의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문제점들은 우리랑 온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할 때 이게 1년 3개월 이상 기간이 충분히 필요한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있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요, 기존에 발의됐던 5개의 의원안 중에 가장 짧은 연장 기간이 3년입니다.

그리고 제가 LH나 정부나 이거 중에 비교해서 가장 짧은 걸 하자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 회의 전에도 제가 정부의 입장도 물어봤었고 LH한테도 의견을 물어봤었고 전반적으로 1년 3개월은 최소한의 기간이다 이렇게 여러 번 입장도 확인한 바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해서 이걸 연장해서 내년에 이 연장 논의를 다시 또 하고 또 후보지로 선정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구에서는 이 기간 안에 모든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 무리한 그런 과정들이 생기고 하는 것들을 굳이 우리가 선택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재 위원 또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이 기간이 길어졌을 때 주민들이 받는 또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나 그런 거는 없나요? 보통 기간이 길어지면 물가도 뛰고 아무튼 무조건 힘들어지잖아요. 어때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아무래도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그런 측면이 있는데 결국은 개개의 토지주나 건물주 입장에서 이걸 했을 때 과연 내가 얼마만큼 추가 부담이 발생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요 그건 각기 사업지구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김정재 위원 저는 그거예요. 이걸 하자 하지 말자 이런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하는데, 특히 공공이 하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을 주민들에게 해당 당사자들한테 알려 줘서 가장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하자는 거지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수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개개인이 반대하는, 30%로 대상지가 결정되니까 반대하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참 난감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지구지정도 3분의 2 동의이기 때문에 3분의 1 30%는 굉장히 큰 겁니다, 자기 재산권이 다 걸려 있는 건데. 그래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빨리 결정을 하고 자기들의 의견도 관철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저도 지역구를 하고 있지만 지역구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찬반이 계속 대립되고 그러면 불편한 점도 있고 또 지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간을 좀 더 연장하자 하시는 분들은 찬성하는 분들이 계속 푸시를 해서 이런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의 취지는 1년 3개월 하는 게 절대 선이다 이게 아니라 내년 말쯤 되면 지난 번에 지정했던 것들이 예정지구 지정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신속하게 하자 그런 취지니까요.

저희가 충분히, 위원장님께서 한번 같이 논의해서, 법은 일단 통과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일몰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소위원장 권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은 고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손 들어서 발언하십시오.

○김정재 위원 저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권영진 복기왕 위원님께서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복기왕 위원 다음에 저 준다고 그래 놓고 또 안 주시고, 저를 좀 살펴 주시옵소서.

○소위원장 권영진 복기왕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정재 위원님, 앞으로 먼저 손 들어 주십시오.

○김정재 위원 예.

○소위원장 권영진 죄송합니다.

○복기왕 위원 저는 오늘 이 법에 대해서 다른 구체적 개정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는 이야기를 못 하니까 추후에 하고.

지금은 일몰이 바로 목전에 다가와서 일몰 문제만 논의하면 되기 때문에 되게 쉽게 끝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민한 문제군요.

이게 어려운 사업이에요. 쪽방촌 같은 경우에 여기에 그저 월세나 전세로 거주만 하시는 분들은 나는 어디로 가라고라는 민원 그리고 조그만 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나한테 보상이 크게 오지 않을까 이런,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도심 재개발 이런 거는 사업 기간이 굉장히 길니다. 그런데 이걸 애시당초에 3년으로 한 것 자체가 너무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후보 지역에서 예정 지역까지 절반도 안 된 거지 않습니까, 3년이 됐는데도.

저는 사실 3년도 굉장히 짧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다만하고 다른 의견들을 조율해야 돼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1년 3개월 연장 이런 안을 갖고 오면 안 됩니다. 안 하겠다는 말로 들려요.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린벨트 해제하고 산 깎아서 집 지으면 편합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찬반 의견들이 나와요. 쉽게 쉽게 하지요. 그런데 허물어져 가는 도심들에 대해서 제대로 재개발하고 도시 미관도 새롭게 만들고 또 그러면서 주택도 공급하고 여러 가지 효과를 다양하게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부처에서 1년 3개월 이렇게 안을 갖고 오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이소영 위원께서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 실제 서울 지역에 이 대상지를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절박한 지역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문진석 간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상설화시켜서 아예 그 민원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오니까 상설화시키자라는 안을 냈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연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대상지 분들이 최소한 연장은 됐다, 그래도 충분히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연장을 주려면 최소한 3년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거래하는 것처럼 시간 가지고 좀 민망하긴 한데, 이거는 여야 간의 의견 다툼처럼 보이게 하는 것 자체가 민망하니까 부처의 결단이 좀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권영진 안태준 위원님 하시고 김기표 위원님 하시고 윤영석 위원님 하시고. 손 든 순서대로 발언권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제 사정을 이해해 주십시오.

○안태준 위원 저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거를 하실 분들은 좀 하셔야 되니까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안 할 분들은 좀 안 해야 될 근거가 필요하니까 이거는 우리 부처에서 정부에서 취소 요건을 만들어 오면 돼요. 그러니까 안 할 분들이 문제거든. 안 할 분들은 안 하고 싶은데 너무 이게 늘어지니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 단계에서 지구지정까지는 1년 안에 안 하면 자동 취소되게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후보지에서 예정까지 30~50%에는 기간이 현재는 없어요. 없고 또 지금 얘기하는 것도 들어 보면 나중에 반대 요건, 50%가 반대하면 후보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보다 명확히 그 사업에 탄력을 주려고 그러면 그 기간을 정해 주면 되지요, 오히려 그 기간을.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법 개정할 때 말씀하신 대로……

○**안태준 위원**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하면 기간을 몇 년을 늘리더라도 별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조금 명확하게 하면……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그러니까 후보지 발표 단계부터 법정 단계로 들어서기 때문에 후보지 발표에서 예정지구까지 일정 기간 내에, 예를 들어서 2년이나 3년을 두고 안 하면 자동 실효되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안태준 위원** 그렇지요.

○**김기표 위원** 이게 지금 안 하려는 그 방향을 자꾸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되는 배경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쪽방촌들도 있고 그걸 민간에 맡겨 놔서는 도저히 도시의 주거 환경도 개선이 안 되고, 아무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을 지자체나 거기 사는 사람들이 제발 우리 뭔가 환경 개선을 좀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사실은 시작된 거거든요. 이거를 보십시오. 놔두면 결국 누구도 해결 못하고, 이게 4분의 3 동의 이렇게 하면 해결 못 하고 계속 슬럼화가 되고 남으니까 비록 수용 방식이 약간의 폭력적이랄까요, 그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약간은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거라면 애초에 이 정책 자체는 가는 쪽을 기준으로 두고 있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떤 수익이나 이런 걸 따질 게 아니고 국가 전체 도시 전체적으로 어떻게 갈 거냐는 걸 생각하면 되는 방향으로 해 주는 것이 국가나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짧게 해서 안 되게 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하자 이게 논의의 우선이 돼서는 안 되고, 그래서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면 저는 충분한 기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제 의견은 이 정도로 하지요.

○**소위원장 권영진 윤영석 위원님.**

○**윤영석 위원** 이 사업 방식은 상당히, 이게 일몰로 한 이유가 결국은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주기 때문에 일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택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지금 우리가 일몰 연장을 한다는 것은 기준에 이 법에 의해서 결국은 진행이 돼 가지고 후보지로 발표되고 아직 예정지구 지정이 안 된 그런 곳에 국한해서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후보지로 지정된 후에 후속 절차가 아직 완비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그런 곳에 대해서 일단 1년 3개월에서 3년 정도 사이에서 좀 적당한 기간을 우리가 합의해서 빨리 종결짓고.

그다음에 기존의 3년의 일몰기한이 다 끝나 가는데 또 새로운 후보지를 발표한다?

후보지 발표합니까, 또? 아까 그런……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아니, 신청 움직임은 있는데 아직 별도로 계획은 없습니

다.

○**윤영석 위원** 그거는 이 제도 취지에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미 이게 3년으로 정한 일몰기한이 다 됐는데 또 새로운 후보지를 발표하면 이걸 나중에 몇 년 지나서 또다시 일몰기한을 연장하자는 그런 요구가 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 운영상에서 그러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매듭을 지어서 더 이상 후보지 발표를 안 한다든지 하는 그런 걸 우리가 행정적으로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하튼 이 부분은 1년 3개월에서 3년 사이 거기에 대해서 정부하고 좀 빨리 협의를 해 가지고 적절한 기간을 우리가 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법이 제정될 때 여러 가지 토지 소유권도 제약되고 사유재산권 제약 측면도 있고 해서 3년 한시 일몰법이니까 일단 추가 신규 후보지는 안 하는 조건으로 3년 연장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소위원장 권영진** 안 하는 조건으로?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김정재 위원** 손 들었습니다.

○**소위원장 권영진** 예.

○**김정재 위원** 감사합니다.

윤영석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처음 스타트할 때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좋은 취지들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일몰기한이 다가왔기 때문에 저는 후보지를 새롭게 하는 건 당연히 안 한다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안 한다 생각을 하고. 1년 3개월도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년 말 정도 되면 후보지 지정한 곳이 예정까지 가니까 이게 무난히 끝날 거다라고 했는데 그 시간이 정 너무나 촉박하고 혹시라도 기간을 넘으면 어떡하나라는 우려가 있다면 조금 더 연장을 하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

다만 그걸 조건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건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만약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위원님이 계신다면 저희가 그런 거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고 기간은 조금 더 연장을 하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소위원장 권영진** 잠깐만요,

지금 기간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되니까, 우선은 차관님이 새로운 제안을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신청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3년을 연장해서 지금까지 신청한 지역들은 충분히 시간을 줘서 좀 성사가 될 수 있는 시간들을 드리자 이 제안인 것 같은데 어떠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김은혜 위원** 기본적으로 일몰기간 내에 신규 후보지 추가 발표를 하지 않는 것, 당연한 거지요. 그거를 기간 연장을 하시면서 형평을 맞추는 비례 원칙처럼 이야기하신 거, 그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당초에 이 법이 처음에 개정안이 나왔을 때 문제는 뭐였냐면 주민들의 선택권을 강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은 민간도 가고 싶고 공공도 가고 싶고 결국 주민들의 선택이 제일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초에 후보지 지정을 주민 10분의 1만 신청하면 후보지를 지정할 수 있는 요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 또한 LH 주도의 공공의 개발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 그래서 민간이 함께 공동으로 하는 걸 넣었습니다. 그렇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민간 공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리츠 또한 지방공사가 50% 이상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한 민간이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후보지 지정을 했는데 몇 곳이었지요? 70여 곳이었나요?

○김정재 위원 79곳.

○김은혜 위원 차관님, 79곳 중에 몇 군데가 철회했습니까, 주민들이 철회한 데가?

○김정재 위원 24개.

○김은혜 위원 27곳이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현재 55곳 남아 있으니까요.

○김은혜 위원 27곳입니까, 아니면 24개입니까?

○김정재 위원 24개.

○김은혜 위원 그러면 30%가 철회했다는 거잖아요. 그 주민들이 철회한 이유가 갈등도 있었고 사업성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자신이 보상되는 데 대한 재산권 침해라는 문제 때문에 철회했다면 그 주민들의 뜻도 있는 겁니다. 그 나머지 주민들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한 주민들 경우에 보면 목표 대비 실적률이 2%에 불과해요. 지구지정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왜 못 가느냐? 또 비슷한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후보지로 가고 싶은 주민분들이 있다면 후보지로 갈 수 있는 기간이 1년 3개월 동안 충분히 있는 겁니다.

물론 의원님들의 3년 5년 7년 숫자를 존중합니다만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기간과 범위를 정할 때는 그동안에 주민들에게 적용됐던 통례와 상례에 따라서 행정행위의 적법성과 적합성이 이루어질 때 기간을 정하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법이 실효적으로 발효할 수 있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법이 1년 3개월이라면 저는 이 기간을 준용해서 가되 1년 3개월 뒤에 논의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3년 5년 하면 3년 5년 뒤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한 번 논의를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년 3개월 안을 준용해서 진행이 될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권영진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이게 견해가 좁혀지지 않아서 오늘 처리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11시부터 전체회의가 잡혀 있어서 아마 우리 소위 위원이 아니신 분들이 다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견해가 1시간 동안 조금도 좁혀지지 않으면 오늘 처리 안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제가 한마디 해 드릴게요.

○민홍철 위원 저도 한 말씀만.

○소위원장 권영진 민홍철 위원님.

○민홍철 위원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권영진 발언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민홍철 위원 기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참 단순한 것 같은데요 저는 다른 관점

에서 생각을 합니다, 선택권의 문제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공공 복합개발을 한시법으로 우리가 정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민간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정했던 말이에요. 그러면 개발하기 상당히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줬어요.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민간 도심복합 개발사업에도 적용될 것 아닙니까, 하고 싶은 사람과 안 하고 싶은 사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다만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토지수용 방식이 아니고……

○**민홍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식은 어떤 차이가 있더라도 쪽방촌이나 정말 노후화된 도시를 복합개발할 수 있는 선택권이 사실은 넓어졌어요. 처음에는 공공만 들어가서 했는데 지금은 민간도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마찬가지 일 겁니다. 어떤 데는 공공으로 가자 하는 데가 있고요 또 어떤 곳은 민간으로 가자 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선택권을 넓혀 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1년 3개월,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민간 복합 이 법이 25년 2월 7일 날 시행되네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러면 1년 3개월이면 좀 적다, 공공에 있는 부분.

현재 공공 신청한 사람들도 민간으로 선택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바꿀 수 있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러니까 그 선택 폭을 넘겨주려면 국토부가 좀 유도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공공으로 가기가 어려운 데는 민간으로도 가라. 그러면 3년 정도 좀 유예할 수 있는 그게 적절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정재 위원** 위원장님, 제안……

○**소위원장 권영진** 좋은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 예, 가장 좋을 제안일 것 같습니다.

법안소위는 다들 아시겠지만 각자 의견을 얘기하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가기 되게 좋은 협상의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원장님, 마지막 의견은 다 개진했으니까, 기간 이게 심풀한 문제니까요 한 2~3분간 얘기 좀 나누고 그리고 결론 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권영진** 2~3분간 정회를 하자고요?

○**김정재 위원** 예, 왜냐하면 사실은 어떤 때는 완전 당이 다른 정의당, 가치도 완전히 다른 분들하고도 저희가 같이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좀 양해도 구하고 아주 다른 생각을 가진 위원님들은 얘기도 좀 하고 그럴 시간이 그래도 한 3분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정회해 주시면……

○**소위원장 권영진** 위원장 얘기만 잠깐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통해서 지금 만약에 일몰이 되면 정말 난감해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33개 사업장에 있는 4만몇천 가구라면서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5만 5000입니다.

○**소위원장 권영진** 5만 5000가구. 그러니까 그분들을 봐서 연장을 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연장을 해 드려야 되는데 연장 기간을 얼마로 할 건가를 가지고, 제가 보니까 1년 3개월과 3년인 것 같습니다. 두 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데 이것을 가지고 양쪽의 어느 쪽에 손을 들고 이것 때문에 합의 못 해 가지고 또 일몰

시키는 것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발표에서부터 예정지구 지정하는 데까지 평균이 2년이라 그랬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소위원장 권영진 2년이기 때문에 지금 남은 시간 1년 3개월만 쥐도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산술적인 평균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주면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3년으로 갈 경우엔 이게 3년 한시법인데 3년을 더 늘린다는 것은 그건 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은 2년 정도로 해서 하면, 그러면 아마 2년 정도 기간을 주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짧다고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안 들어올 거예요. 아니, 법이 있는데 법에다가 지금 신규는 못 들어온다 이렇게 못 박는 것도 웃기는 것 아니에요? 신규 들어올 수 있는 여지도 열어 놔야 돼요. 그런데 그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2년으로 하시지요. 2년으로 해서……

○김기표 위원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3개월.

○윤영석 위원 2년으로 하고 더 이상 일몰 연장이 없는 것으로 못을 박으시지요.

○김정재 위원 그러니까 날짜를 2년 몇 개월 이렇게 하면 웃기니까 26년 12월 31일.

○민홍철 위원 그러면 저 한 가지 질문을 좀 할 게 있는데요.

○소위원장 권영진 예.

○민홍철 위원 국토부차관님, 만약에 이 법이 공공이 한시가 돼 가지고 일몰이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도심복합개발에 공공은 참여를 못 합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의 주민들이 공공으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정책적 수요가. 그렇지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일몰이 돼 버렸어요. 일몰이 돼 버리면 민간 복합개발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차관님?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민홍철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 지자체장들의 선택권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러면 공공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윤영석 위원 민간도 LH가 참여할 수 있어요.

○민홍철 위원 아니, 이 법으로도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공공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공공이 먼저 하고 민간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은 폐지해 버려요. 그러면 민간만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공공이 하는 재개발사업도 있고요. 공공재개발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내년 2월부터 발효되는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조합 방식이 아니고, 조합이나 추진위 같은 게 없고 그냥 신탁이나 리츠 방식이거든요. 리츠 방식에서 LH라든지 SH라든지 iH 같은 주택 공기업 공공기관도……

○민홍철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어느 방법이 더 쉽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민간 도심복합사업으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민홍철 위원 아, 이 방법보다는 그게 더 쉬워요? 수용 방식보다는 민간 방식이 더 쉬운 방법이냐 이거지요, 쉽게 할 수 있느냐. 저는 정책적인 문제를 따지는 거예요.

○소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금 그 논의까지 가 버리면,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도심 복합에서 민간으로 안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것을 해서 하자라는 거고 제가 보건대는 2년을 더 주거나 우리가 논의해서 조금 더 연장해서 주면 그렇게 민간개발로는 도저히 개발이 안 돼서 공공이 개인의 재산권까지 침해해 가면서 수용해서 하는 방식의 기회는 일단은 쳤다고 봅니다. 나중에 도심이 노후화돼서 필요할 때 한시법으로 또 만들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그다음에 논의할 문제고요.

이제 결론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기표 위원님하고 김정재 위원님이 중재안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몰을 연장하는 안을 제안했는데 위원장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소영 위원님하고 김은혜 위원님, 조금씩만 양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합의해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은혜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예.

○소위원장 권영진 아이고, 감사합니다.

○복기왕 위원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합의를 합니까? 세상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부처에서 여야 간 싸움 붙이는 거예요? 안을 이렇게 갖고 오니까, 전임 정부에서 했던 정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소위원장 권영진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복기왕 위원 3년이나 2026년 12월이나 얼마 차이 안 나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오래 이야기하면서 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우리가 그렇게밖에 못 합니까?

○소위원장 권영진 복기왕 위원님……

○복기왕 위원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해서도 사실상 우리가 비판을 받아 가면서, 문자폭탄 엄청나게 받았어요. 비판받아 가면서 어쨌거나 정책을 주도하고 집행하는 건 정부니까 저희가 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이렇게까지 오래 이야기하고 거래할 사안이 아닙니다. 부끄러워요.

○김정재 위원 거래한 적 없습니다. 아니, 왜 거래지요?

○소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너무 그렇게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논의를 들어 보니까 연장은 해 줘야 되는데 충분한 연장을 주는 것이 반드시, 이것은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법 아닙니까? 이게 때로는 희망고문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 연장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들도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각자 다른 의견들을 양보해서 하나로 만들어 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소영 위원 복기왕 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 적절한 지적이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게 현안이 걸려 있는 상황이어서 빠르게 통과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이렇게 양보한 내용으로 통과를 하고,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 지구 또는 다른 사정이 있는 지구 이런 것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은 추가적인 개정안 검토를

9월에 빠르게 해서요 제도 보완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혜 위원님 마지막 말씀하십시오.

○김은혜 위원 저는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존중합니다.

저희가 전세사기 특별법 할 때 저희 위원들도 문자폭탄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민주당 위원님들도 문자폭탄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모든 주민분들의 뜻에 100% 부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합의하고 대화하고 절충했던 게 여기 계신 민주당 소위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셨던 그런 좋은 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사안은 일몰이 된다면 많은 주민분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 저 또한, 저는 사실 그 당시에 제가 했던 발언까지 적어 왔는데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국토부가 발표한 대로 시행 성과를 보아서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런데 시행 성과를 보면 연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분들의 거주권과 주거권, 재산권에 대해서 현격하게 이익에 부응해야 되는 위원의 소임을 다해서, 저도 찬성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동안의 민주당 위원님들이 보여 주셨던 저력에 비추어 정쟁이라고는 말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영진 그래요.

○황운하 위원 저도 한 말씀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소위원장 권영진 황운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운하 위원 애초 1년 3개월이냐, 3년 이것이 저는 금세 결론이 날 줄 알았어요. 한 5분 10분이면 결론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여야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당별로 1년 3개월, 3년 이렇게 딱 나뉘어 가지고 좀 불필요할 정도로 과도하게 논의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결론이 났기 때문에, 우선 제가 결론에 이의는 없고 앞으로 이런 문제 가지고 정당 간의 입장을 완고하게 고집하는 이런 회의 방식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낭비적인 회의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권영진 황운하 위원님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위원장의 운영의 미숙에 의해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하나 좀 말씀 더 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 2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 지구의 현물보상 유효기간이 지금 현재 도심복합사업의 일몰기한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금년 9월 20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26년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예, 그렇게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권영진 예, 쪽방촌 이것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리면 법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항 및 제7항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고 그 외의 법안은 일몰 연장 외에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법안만 대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그 외의 법안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제3항 및 제7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하면 쪽방도 들어간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권영진 김기표 김은혜 김정재 민홍철 박용갑 복기왕 서범수 안태준 염태영
윤영석 이소영 황운하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재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제1차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김규철